

물권으로 보며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시설사용자는 항만청의 설치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당해 시설물은(크랑카싸이로와 사무실·운전실 1동) 항만청에 기부채납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사용권리인 것인데, 당초에는 관리권의 의미는 물론 관리권이 있다는 사실자체도 몰랐다. 다만 성업공사만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알고 부도법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98년 2월 대위등기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즉시 등록관청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 문의하여 관리권을 압류하기에 이르렀고 훗날 본 공장을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본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채권확보에는 한시름 놓게 되었다. 다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사무소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인대표에게 배달증명하고 일간지에 공시송달하였다.

그후 이듬해 6월 성업공사 소유인 시멘트 본공장을 임차하여 가동한다는 업체가 나타났고 드디어 공장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공장가동과 관련한 우리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모두 해결되었으나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처분만이 최종 문제가 되었다.

먼저 임차업체에서 동 관리권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국정법 제62조 수의계약) 7억여원에 이르는 채납액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공매함이 제반 여건상 적절치 않아(항만권은 본 공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성업공사 소유의 본 공장은 이미 경매중에 있어 공매·경매 낙찰자가 각기 다를 경우 지역으로나 공장운영자나 모두 이로울게 없음)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동 조건을(채납액 전액납부) 통보하였다.

그러나 관리권의 잔존가액을 비교 검토한 임차업체에서 채납액에도 미치지 않는 매매가액을 제시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와 결국 수의계약은 파기되고 말았다.

어떻게 하든 공장은 가동되어야 겠고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던 중 본 공장소유주인 성업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본 공장과도 매치되고 공장 일체를 임대차할 수 있으므로 성업공사가 인수하여 줄 것을 서면 요청하였다.

그러나 성업공사에서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는 회신으로